

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


인천지방검찰청

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

- 제정 2013. 10. 01.
- 개정 2015. 09. 11.
- 개정 2017. 05. 16.
- 개정 2018. 01. 15.
- 개정 2019. 09. 16.
- 개정 2021. 05. 04.

인천지방검찰청(이하 본 기관이라 함)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한다.

1.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,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· 운영한다.

-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
-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

2. 설치 위치, 설치 대수 및 촬영 범위

설치 대수	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190대	1. 청사건물 내·외부 및 주차장(164대) 2. 어린이집 내·외부(26대)
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직 책	연 락 처	
청사내·외부 주차장	개인영상 정보보호 책임자	총무과장 032-860-4540	
	분야별책임자 (접근권한자)	관리계장	032-860-4534
		보안담당	032-860-4516
		시설담당	032-860-4535
		방호담당	032-860-4297
어린이집	어린이집원장	032-860-4167	

4.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 장소

촬영시간	보관기간	보관장소
24시간	촬영일로부터 30일	방호실
24시간	촬영일로부터 30일	경찰관실
24시간	촬영일로부터 30일	교도관실
24시간	촬영일로부터 60일	어린이집 사무실

-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(현재 어린이집의 보관기간은 60일이며 그 외 보관기간은 30일이 경과하면 모두 자동 삭제되고 출력물이 있는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

○ 확인 방법

가. 청사 내·외부 및 주차장 영상정보

- 수사 기관 등 외부 기관 : 개인영상정보 책임자 에게 『별첨 1』 ‘개인 영상 정보 열람 등 청구서’ 를 작성하여 공문요청 한다.
- 개인 : 본인이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『별첨 1』 ‘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’ 작성하여 개인영상정보 책임자 에게 요청한다.

나. 어린이집 영상정보

- 보호자 등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『별첨 1』 ‘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’ 작성하여 개인영상정보 책임자 에게 요청한다.
- 개인영상정보 책임자 승인 후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
- 분야별 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 및 제공 결과를 즉시 총무과장 에게 통보한다.

○ 확인 장소

- ① 청사 내·외부 및 주차장 영상정보 : 방호실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곳
- ② 어린이집 영상정보 : 어린이집 사무실

○ 단,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거부사유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 통지한다.

가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지장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(예시.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등)

○ 청구서 및 관리대장 관리

-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를 접수하고 처리한 담당자는 『별지 2』 ‘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’을 위 청구서와 함께 관리한다.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○ 정보주체가 개인의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단,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고,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청구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-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,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며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, 열람자,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.
-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.

8.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- 본 『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』은 2021년 5월 4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.

[별지 1]

(앞 쪽)

개인영상정보(□ 존재확인 □ 열람) 청구서			처리기한 <hr/> 10일 이내
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
청구인	성 명	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 소		
정보주체의 인적사항	성 명	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	
	주 소		
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	영상정보 기록기간	(예 : 2021.01.01 18:30 ~ 2021.01.01 19:00)	
	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	(예 :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)	
	청구 목적 및 사유		
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, 열람을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○ ○ ○ ○ 귀하			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			

<참고>

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

- 구분 : 이용/제공/열람/파기 중 1개에 √ 표시
 - 이용 :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
 - 제공 :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
(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)
 - 열람 :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
(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)
 - 파기 : 이용·제공·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(자동 삭제 포함)
- 일시 : 신청받은 일시 기재('12.10.10. 14:00 등)
- 파일명/형태 :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('21.10.5일 3~10번 CCTV/동영상, 121005-0003-00동.mp4 등)
- 담당자 :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/직급/성명 기재(00과 00직급 홍길동)
- 목적/사유 :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/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(청소년 범죄수사, 가출자녀 경로확인, 자전거 도난확인 등)
- 이용·제공받는 제3자/열람 등 요구자 :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, 직급, 성명, 연락처 등을 기재(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-123-4567)
- 이용·제공하는 근거 :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
 -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
- 이용·제공 형태 : 자료열람, 자료복제(프린트, F/D, CD, USB), 기타(000형태)로 구분하여 기재
- 기간 및 파기에정일자 :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('12.10.11~11.10)
 -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에정일자를 반드시 기재(파기에정 '12.11.10)
 -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(30일 주기 자동 파기, 매월 1일 확인)
-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
 - 결과 회신 : 통보받음(수사종결 파기, '12.10.10, 파기자 김길동), 통보받음(기록물 보존, '12.10.10), 통보받음(검찰 등 타기관 이첩, '12.10.10)
 - 자료 반환 : 자료반환('12.10.11) 받은 후 파기함(12.10.11, 파기자 이길동)
 - 기타 :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·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"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('12.10.10)" 등으로 기재
 - 파기기간 연장 :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,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
-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: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